

제 목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 개최

-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을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변경 등 의결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이하 “외시협”)는 ‘26.5.29일(금) 총회를 개최하여 원/달러 거래시간, 거래일 등 외환시장 관련 중요사항을 의결

①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하여 ‘26.7.6일(월)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을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변경*

* (현행) 오전 09:00 ~ 익일 오전 02:00 → (변경) 월요일 오전 06:00~토요일 오전 06:00*
단, 원화-이종통화간 거래시간은 현행(9시~15시30분) 유지

뉴욕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기간 중에는 월요일 오전 6시~토요일 오전 6시 운영
그 외 기간은 월요일 오전 7시~토요일 오전 7시 운영

- 주말과 1.1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우리 공휴일 포함)에 원/달러 거래가 가능해지고, 일중 무중단 방식으로 운영

* 매년 첫 영업일(예 : 1.2일)은 오전 9시 개장, 마지막 영업일(예 : 12.31일)은 24시 폐장

- 동 조치로 외환거래 시간의 공백 해소, 국내외 투자자 및 수출입 업체들의 환전편의 제고 및 거래비용 절감 등이 기대*

* 우리나라와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등 및 수출입 업체가 원하는 시간에 원/달러 외환거래를 실시하고, 낮은 거래비용으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

② 원/달러 거래는 우리 공휴일에도 자유롭게 가능할 수 있으나, 결제(거래 당사자간 거래 자금의 이체)는 일반적인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의 영업일에 처리하기로 결정

* 다른 통화, 우리 주식·채권 등도 은행의 비영업일(Bank Holiday)에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제는 가장 가까운 은행 영업일로顺延

□ 원/달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따라 06시~익일 06시 동안 매시 정각의 TWAP*이 제공될 예정(현물환중개회사)

* 시간가중평균환율(Time Weighted Average Price): 각 현물환중개회사에서 산출시점 부근의 가격(환율)을 단순평균하여 산출

○ 시가·고가·저가 환율은 06시~익일 06시 기준으로 제공하고, 現 서울 15시30분 종가 환율*(Seoul 15:30 Closing Spot Rate) 및 매매 기준율(MAR)은 당분간 현재와 동일 기준을 유지

* 당분간 외환당국은 동 환율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통계, 보도자료 등)할 계획

□ 금번 총회에서 24시간 거래 체계와 글로벌 관행에 맞게 매매기준율의 산정 방식을 변경(예 : 현행 MAR*→ 변경 TWAP)하는 방안과

*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30분까지 거래된 환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

○ 매매기준율의 변경과 관련한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된 매매기준율을 적용(예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년 후부터 변경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 외환당국은 금번 외시협 총회 등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중 매매기준율의 변경 등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계획

붙임. :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 전·후 대비표

문의처 : 우리은행 자금시장운용부 팀 장 나지영 Tel : (02) 2002-4121
 서울외국환중개(주) 외환중개부 팀 장 김재민 Tel : (02) 6211-8101

서울 외 환 시 장 운 영 협 의 회

(붙임)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 전·후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p>제Ⅳ장 거래절차에 관한 시장관행</p> <p>제 38 조 거래시간</p> <p>1.~ 2. (현행과 같음)</p> <p>3. 서울외환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원화와 미달러화간 거래시간은 원칙적으로 은행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원화와 이종통화간 거래시간은 원칙적으로 은행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매년 첫 영업일은 원화와 미달러화간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원화와 이종통화간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고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한다.(2003. 11. 18, 2005. 1. 19, 2007. 9. 18, 2017. 8. 18, 2024. 6. 14. 개정)</p> <p>(항 신설)</p>	<p>제Ⅳ장 거래절차에 관한 시장관행</p> <p>제 38 조 거래시간</p> <p>1.~ 2. (현행과 같음)</p> <p>3. 서울외환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원화와 미달러화간 거래시간은 원칙적으로 뉴욕 DST(Daylight Saving Time)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년 마지막 영업일 24시부터 다음해 첫 영업일 오전 9시까지는 폐장한다.(2003. 11. 18, 2005. 1. 19, 2007. 9. 18, 2017. 8. 18, 2024. 6. 14, 2026. 7. 6 개정)</p> <p>4. 서울외환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원화와 이종통화간 거래시간은 원칙적으로 은행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며,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고 매년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한다.(2026. 7. 6 제정)</p>	<p>문구 수정</p> <p>항목 신설</p>

현행	개정	비고
<p>제 43 조 표준결제일</p> <p>1. 원화를 대가로 한 외환거래의 결제일은 <u>서울외환시장의 영업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결제일이 거래상대통화국 외환시장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양 시장이 동시에 개장하는 첫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제 43 조 표준결제일</p> <p>1. 원화를 대가로 한 외환거래의 결제일은 <u>양 국가인 한국과 거래상대통화국이 모두 영업일인 날로 한다.(2026. 7. 6 개정)</u></p> <p>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26. 7. 6.)</u></p> <p><u>제1조 시행일</u></p> <p><u>이 규범은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u></p>	<p>문구 수정</p> <p>항목 신설</p>

현 행	개 정	비 고
<p data-bbox="85 252 448 292"><부 록> 용어 정의</p> <p data-bbox="85 363 887 403">PART II : 거래기간, 인도일, 만기일에 관한 용어</p>	<p data-bbox="1012 252 1375 292"><부 록> 용어 정의</p> <p data-bbox="1012 363 1814 403">PART II : 거래기간, 인도일, 만기일에 관한 용어</p> <p data-bbox="1012 475 1451 507">DST(Daylight Saving Time):</p> <p data-bbox="1012 523 1917 603">일광 절약 시간제 또는 서머타임. 하절기에 국가의 표준시 간대를 원래 시간보다 한 시간 앞당겨 사용하는 제도</p>	<p data-bbox="1966 531 2110 563">항목 신설</p>